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59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11. ~ 2022. 8.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윤성호	1983.02.03.	0178200274100004652	4,720,000	서울 양천구 중앙로
2	전미숙	1964.09.01.	0178200274100004654	10,800,000	경남 양산시 양주5길
3	윤성근	1967.04.03.	0178200274100004655	30,000,000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	이덕재	1966.10.13.	0178200274100004656	18,00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
5	박준호	1965.07.30.	0178200274100004657	18,0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6	조연민	1964.09.09.	0178200274100004659	18,00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
7	김미자	1967.08.15.	0178200274100004660	18,000,000	경남 밀양시 북성로
8	최숙자	1970.09.20.	0178200274100003544	31,860,000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9	장영환	1956.02.19.	0178200274100003545	31,860,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10	최용석	1968.07.25.	0178200274100003546	31,86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
11	이미현	1987.01.20.	0178200274100004665	18,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2	황은종	1963.04.22.	0178200274100004668	27,000,000	부산 북구 가람로
13	최태수	1979.12.20.	0178200274100003548	31,860,000	부산 남구 남동천로
14	김영준	1967.01.20.	0178200274100003550	31,860,000	울산 울주군 범서읍 등념길
15	이분남	1947.05.17.	0178200274100000388	3,150,000	울산 북구 박상진4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